

“정신대는 戦争犯罪행위”

국제법상 처벌가능, 형사처벌권 한국등 모든나라 박원순변호사, 민사 배상청구도 시효관계 없어

하바드大 객원연구원인 박원순변호사는 22일 「일본군부의 직접 통제하에 이루어진 정신대의 강제모집과 동원은 전쟁범죄 또는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범죄를 저지른 자를 국제법상 처벌할수 있다」고 말했다.

박원순 변호사는 이날 한국 고문희생자 원호회(대표·서승) 주최로 UC버클리 Dwinelle Hall 254호실에서 열린 「국제인권법으로 본 정신대」를 주제로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원순 변호사는 관습법의 형태에서 최초로 성문화된 뉴른베르크 전법재판소의 헌장에서 “비인도적 범죄”에 대한 정의를 인용 이같이 말한후 1948년의 제네바 협약과 UN헌장도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제법상 비인도적 범죄행위의 경우 시효적용이 배제된다고 밝힌 박원순 변호사는 형사적 처벌권은 피해국인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 모든 나라가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일본은 정신대 관계자를 직접 조사 처벌하든지 아니면 범인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박원순 변호사는 주장했다.

또 박원순 변호사는 일본 정부는 정신대 문제를 비롯한 전후보상문제에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정신대 피해자의 경우 민사적으로도 배상청구권을 시효와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UC버클리 학생과 객원연구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강연에서 박원순 변호

사는 이의 근거로 최근까지도 정신대의 존재 사실을 일본정부가 부정했던 것은 정신대 문제가 양국 교섭대상의 청구권 항목에 들어가지 않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원순 변호사는 이날 강연에서 독일이 배상법을 제정 나치치하의 피해 유대인들에 대한 배상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예로 제시하면서 일본정부의 정신대 희생자의 보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는 「법률상으로 일본정부의 배상 책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1965년 한일협정 체결당시 거론되지 않은 정신대 보상이 해결되었다」는 주장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박원

ARIAN PERSPECTIVE ON CHU



▲하바드大 객원연구원인 박원순변호사가 22일 UC버클리에서 “국제인권법으로 본 정신대”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있다. <손수락 기자>